

## 美법원 “서비스업체 서버에 TV프로 녹화하는 것 합법”

2008년 8월 4일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회사 서버를 이용해 TV 프로그램 녹화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은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콘텐츠 업계에서 원격저장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 Digital Video Recorder)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콘텐츠 업계의 주장을 미 연방고등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6년 3월에 미국 케이블TV 회사인 케이블비전(Cablevision)이 퍼스널 비디오 레코더(Personal Video Recorder, PVR)인 TiVo와 매우 유사한 원격 DVR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자는 자신의 장비가 아닌 케이블비전의 서버에 TV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재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발표되자 미국 영화사와 방송사들은 시청자가 자신의 TV나 비디오를 통해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원격 DVR을 통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비전은 녹화된 프로그램이 회사 시스템에 저장되지만 녹화를 하는 주체는 가입자 개인이라며 반박했으나 1심 재판에선 패배했었다.<sup>1)</sup>

20년전인 1984년 소니 베타맥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나중에 시청하기 위해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시간이동(time-shift)"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VCR(Video Cassette-Recorder)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Fair-use)이라는 판결을 했다. 소니 사건과 유사한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DVR을 통해 저장되는 것에 대해서 원격으로 저장된다는 이유로 콘텐츠 산업의 게임의 법칙을 바꾸려던 미국 영화사와 방송국들의 시도를 연방고등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출처>

- o <http://www.zdnet.co.kr/news/network/broadcast/0,39031043,39171773,00.htm>
- o <http://www.eff.org/deeplinks/2008/08/victory-dvrs-cloud>

1) 이 판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SW IPReport」 제16호의 “김혜창, ‘디지털 방송 원격 녹화의 저작권 침해여부 : 20th Century Fox v. Cablevis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